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자등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요건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무선 충전기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종전 4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등의 설비규격 요건 완화(안 [별표 3])

전기자동차 충전기 또는 전력량계를 제조하려는 자가 계량기 제조업등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전압·전류 기준이 높아 창업 등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실제 제조하려는 제품에 맞는 전압·전류의 검사설비만 갖추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

나.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기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안 [별표 7])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유선·무선 관계 없이 모두 형식승인 대상이나, 무선 충전기는 관련 기술과 상거래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산업 발전 유도를 위해 우선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

(향후 기술·시장 성숙 상황에 따라 필요시 규제 범위 재포함 검토)

다. 형식승인·검정요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별표 8])

형식승인·검정요원의 자격요건 중 자격·학력과 실무경력 등 복수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현행 운영례와 같이 자격·학력 취득 후의 경력을 인정토록 명확히 함

라. 형식승인기관등의 설비규격 요건 보완(안 [별표 9])

초급속 충전기 등장에 따라 1 000 V 급 제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2020.2월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17호), 이를 시험하고 인증하여야 할 형식승인기관등의 설비규격 요건도 같은 기준으로 상향

마.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이동형 충전기는 운반시 진동·충격 등을 고려하여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고정형 충전기보다 적은 4년으로 하였으나, 최근 시행한 이동형 충전기 내구성 시험 결과 10년 이상 고장이 없었음에 따라 불필요한 차별 규제로 판단. 이에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고정형 충전기와 같은 7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바. 계량기 재검정 유효기간 산정 기준 개선(안 [별표 13])

재검정 유효기간 산정시점을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계량기 사용자들은 재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재검정을 신청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받으면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되도록 하여 특정 시기에 재검정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표 제12호가목의 설비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p>1) 교류 전력량계를 제조할 경우: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 이내일 것,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p> <p>2) 직류 전력량계를 제조할 경우: 정확도가 0.1 % 이내일 것,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를 측정 가능할 것</p> |
|---|

별표 3 제1호다목 표 제12호나목의 설비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p>1) 교류 전력량계를 제조할 경우: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p> <p>2) 직류 전력량계를 제조할 경우: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p> |
|---|

을 것

별표 3 제1호다목 표 제13호가목의 설비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류 충전기를 제조할 경우: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 이내일 것,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 2) 직류 충전기를 제조할 경우: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0.1 % 이내일 것,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를 측정 가능할 것

별표 3 제1호다목 표 제13호나목의 설비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류 충전기를 제조할 경우: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 2) 직류 충전기를 제조할 경우: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별표 7 제13호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전기자동차 충전기(무선 충전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2호 중 “사람으로서”를 “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으로서”를 “으로서, 학력 취득 후”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으로서”를 “으로서, 학력 취득 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으로서”를 “으로서, 학력 취득 후”로 한다.

별표 9 제13호나목의 설비규격란 1) 중 “완속”을 “교류”로 하고, 같은 란 2) 중 “급속”을 “직류”로, “500”을 “1 000”으로 하며, 제13호다목의 설비규격란 1) 중 “완속”을 “교류”로 하고, 같은 란 2) 중 “급속”을 “직류”로, “500”을 “1 000”으로 한다.

별표 1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13 제11호가목 및 제11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11. 전기자동차 충전기	7년	7년
---------------	----	----

별표 1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1. 검정 유효기간: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2. 재검정 유효기간: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검정 또는 재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 제11호 가목에 따른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검정 또는 재검정 받은 기기는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가.·나. (생략) 다.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계량기의 종류	설비명	설비규격	계량기제조업자	계량기수리업자·자체수리자	계량기의 종류	설비명	설비규격	계량기제조업자	계량기수리업자·자체수리자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전력량계	가. 기준전력량계	1) 교류 전력량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 이내일 것, 교류전압(0 ~ 380) V, 교류전류(0 ~ 12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직류 전력량계: 정확도가 0.1 % 이내일 것,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20) A를 측정 가능할 것	○	○	12. 전력량계	가. 기준전력량계	1) 교류 전력량계를 제조할 경우: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 이내일 것,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직류 전력량계를 제조할 경우: 정확도가 0.1 % 이내일 것,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를 측정 가능할 것	○	○
	나. 허부하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	1) 교류 전력량계: 교류전압 (0 ~ 380) V, 교류전류 (0 ~ 12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직류 전력량계: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2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		나. 허부하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	1) 교류 전력량계를 제조할 경우: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직류 전력량계를 제조할 경우: 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
13. 전기자	가. 기준전	1) 완속 충전기: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	○	○	13. 전기자	가. 기준전	1) 교류 충전기를 제조할 경우: 단상(single phase)	○	○

동차 충전기	력량 계	ree phase)으로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 이내일 것,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급속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0.1 % 이내일 것,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20) A를 측정 가능할 것			동차 충전기	력량 계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 이내일 것, <u>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u>,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u>직류 충전기를 제조할 경우</u>: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0.1 % 이내일 것, <u>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u>를 측정 가능할 것		
나.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 공급 장치)		1) 완속 충전기: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급속 충전기: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2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	나.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 공급 장치)		1) <u>교류 충전기를 제조할 경우</u>: <u>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u>,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u>직류 충전기를 제조할 경우</u>: <u>제조할 제품의 기준전압과 최대전류에 해당하는 직류</u>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
비고: (생략)					비고: (현행과 같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제10조 관련) 1. ~ 12. (생략)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제21조 관련) 1. ~ 12. (현행과 같음)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u>무선 충전기는 제외한다</u>)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자격을 갖춘 <u>사람으로서</u>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자격을 갖춘 <u>후</u>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전기공학·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u>으로서</u>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u>으로서</u>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u>으로서</u>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정기구가 고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실무자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전기공학·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u>으로서, 학력 취득 후</u>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u>으로서, 학력 취득 후</u>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u>으로서, 학력 취득 후</u>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정기구가 고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실무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형식승인·검정기관 등의 시험·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table><tr><th>계량기의 종류</th><th>설비명</th><th>설비규격</th><th>형식승인기관</th><th>재검정수행 지방자치단체</th><th>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th></tr><tr><td colspan="6">1. ~ 12. (생략)</td></tr><tr><td rowspan="2">13. 전자자동차 충전기</td><td colspan="5">가. (생략)</td></tr><tr><td>나. 기준전력량계</td><td>1) 완속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three phas</td><td>○</td><td>○</td><td>○</td></tr></table>		계량기의 종류	설비명	설비규격	형식승인기관	재검정수행 지방자치단체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1. ~ 12. (생략)						13. 전자자동차 충전기	가. (생략)					나. 기준전력량계	1) 완속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three phas	○	○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형식승인·검정기관 등의 시험·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table><tr><th>계량기의 종류</th><th>설비명</th><th>설비규격</th><th>형식승인기관</th><th>재검정수행 지방자치단체</th><th>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th></tr><tr><td colspan="6">1. ~ 12. (현행과 같음)</td></tr><tr><td rowspan="2">13. 전자자동차 충전기</td><td colspan="5">가. (현행과 같음)</td></tr><tr><td>나. 기준전력량계</td><td>1) <u>교류</u>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three phas</td><td>○</td><td>○</td><td>○</td></tr></table>	계량기의 종류	설비명	설비규격	형식승인기관	재검정수행 지방자치단체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1. ~ 12. (현행과 같음)						13. 전자자동차 충전기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준전력량계	1) <u>교류</u>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three phas	○	○	○
계량기의 종류	설비명	설비규격	형식승인기관	재검정수행 지방자치단체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1. ~ 12. (생략)																																																
13. 전자자동차 충전기	가. (생략)																																															
	나. 기준전력량계	1) 완속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three phas	○	○	○																																											
계량기의 종류	설비명	설비규격	형식승인기관	재검정수행 지방자치단체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1. ~ 12. (현행과 같음)																																																
13. 전자자동차 충전기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준전력량계	1) <u>교류</u>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three phas	○	○	○																																											

	e)으로 역률 1.0에서 0.1 % 이내의 것,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급속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0.1 % 이내의 것,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20) A를 측정 가능할 것			
다. 허부하 발생기 (시험용 전력공급장치)	1) 완속 충전기: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및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급속 충전기: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2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	○
라. ~ 더. (생략)				
비고: (생략)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계량기	유효기간	
	검정	재검정
1. ~ 10. (생략)		
11. 전기자동차 충전기		
가. 이동형	4년	4년
나. 고정형	7년	7년
비고: (생략)		

비고 :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e)으로 역률 1.0에서 0.1 % 이내의 것,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직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0.1 % 이내의 것, 직류전압 (0 ~ 1000) V, 직류전류 (0 ~ 120) A를 측정 가능할 것			
다. 허부하 발생기 (시험용 전력공급장치)	1) 교류 충전기: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및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직류 충전기: 직류전압 (0 ~ 1000) V, 직류전류 (0 ~ 12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	○
라. ~ 더.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계량기	유효기간	
	검정	재검정
2. ~ 10. (현행과 같음)		
11. 전기자동차 충전기	7년	7년
비고: (현행과 같음)		

비고 :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u>1. 검정 유효기간: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u> <u>2. 재검정 유효기간: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검정 또는 재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 제11호 가목에 따른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검정 또는 재검정 받은 기기는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연 락 처	(043) 870 - 5511